



악취방지법 규정 내용과 규제사항

2004

년 2월 9일 환경부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관련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 「악취방지법」을 공포(公布)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案)과 시행규칙(案)을 고시하므로써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발생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으로 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하는 불안감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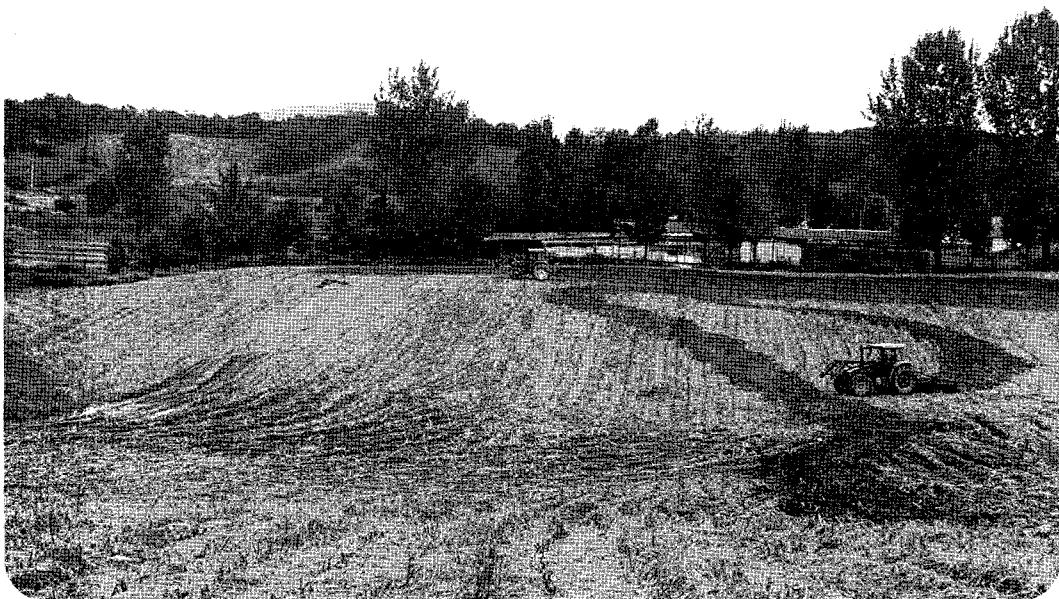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에는 도농(都農)을 차치하고 악취 및 소음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환경부의 「악취방지법」 신설은 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분리시켜 특별히 독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된다. 물론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는 기존 관행적 축산행위로 발생하는 냄새의 강도로는 「악취방지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한 수준이며, 상징적 의미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지난 해 8월 26일 경남 함안군은 칠북면 소재 A 양돈장이 대기환경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생활 악취시설의 생활악취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며, 15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1월 31일까지 양돈장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물론 양돈협회나 양돈농가는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관련법의 적극적인 적용을 질책하고 나섰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생연, 송내지구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지역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축산단지의 이전을 동두천시와 양주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축산단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으로 인한 악취분쟁은 비단 수도권의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축산단지도 악취 등이 심해 인근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전제로 전주시와 축산농가



최 흥 림 교수
서울대학교 농생대
동물환경연구실



▲ 농림부에서는 기존 관행적 축산행위로 발생하는 냄새의 강도로는 「악취방지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한 수준이며, 상징적 의미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간 보상비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다.

더군다나 가축 사육사에서나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문제는 비단 인근 주민들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기후협약) 발효로 인하여 ‘온실감축 강제감소’라는 국제적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는 1997년도 의정서 제정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2008년~2012년에 시행되는 38개국 온실가스 감축시행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여유가 있지만, 2013~2017년에 한국 등 개발도상국 감축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감축률을 지키거나 아니면 배출권을 저개발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일본의 경우, 미쓰비시, 토요타 등의 대기업은 산업규모를 축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타 국가로부터 구매하기 위한 기금 적립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방송매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진 지 오래다.

이런 국·내외 청정 대기보전에 대한 열망 하에서 이제 우리도 축산업의 주장만 되풀이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다음 절(節)은 특히 한 달 후 시행될 「악취방지법」의 축산관련 내용이며, 이를 숙지하여 향후 축산의 악취에 관한 실용적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악취방지법』의 내용

본래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모든 규제를 총괄한 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는 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축사는 불쾌취를 발생시키지만 환경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은 포함하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은 듯하다. 다만, 축사는 생활악취배출시설로 구분되어 악취제거시설 또는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을 포함한 산업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악취방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순간적이고 국지적(局地的)인 악취의 발생·소멸을 규제하기가 힘들

약취방지법 시행! 양돈장 냄새를 잡아라

다는 판단 하에 제정된 것이다. 「약취방지법」의 축산관련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정약취물질을 암모니아, 메칠페르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며, 이중 축산관련 대표 약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각각 1~2ppm, 0.02~0.06ppm을 제시함.(案 제3조, 제8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② 약취배출시설에 축산시설,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정함.(案 제3조 및 별표 2).

③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악취민원이 3년 이

전면적으로 축산농가에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을 만족시켰으면 하였는데 현실은 여의치 않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술(記述)하는 전제조건을 적극 수용하여 병행,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내 효율적인 약취저감기술 및 시설개발, 축산농가가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약취물질측정기의 개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다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약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바란건데 환경부가 2월 10일 「약취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축산농가에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을 만족시켰으면 하였는데 현실은 여의치 않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술(記述)하는 전제조건을 적극 수용하여 병행,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내 효율적인 약취저감기술 및 시설개발, 축산농가가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약취물질측정기의 개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다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약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案 제 7조).

④ 법 11조에 따른 약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위반에 대한 별칙 또한 매우 엄격해져, 「약취방지법」이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약취방지법」의 시행의 전제조건

바란건데 환경부가 2월 10일 「약취방지법」을

또한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미생물 제제(製劑)가 모든 약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2001년에는 약 70여억원의 예산을 미생물제제 구입비로 각 시도에 배당하였으며, 현재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연간 약 200억원의 미생물제제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농림부나 지자체는 당초 기대와 달리, 효과는 별무(別無)효과이고 포대만 축사 안에 쌓아 놓아 공간만 차지한다는 축산농가의 불멘소리를 경청하고, 기존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보다 근원적인 기술적 대책으로 「약취저

감형 친환경축사개발]의 필요성은 이미 월간양돈 8월호 '악취방지법의 의미와 양돈농가에 미치 파급효과'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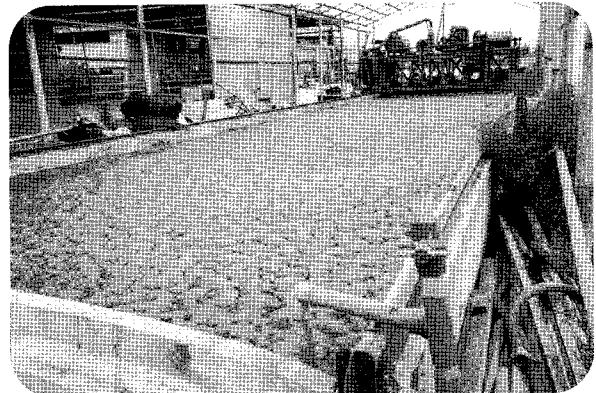
사회적으로는 축산농가도 이제는 축산업의 장애(障礙) 산업인양 동정적(同情的) 지위요구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全) 산업 중 자긍심을 가진 당당한 인격의 산업체로서의 축산의 위상을 인식하고 전체 산업과의 조화와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에 관해서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특히 요즘 같은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유독 축산만은 장 기간 호황을 누리고, 축산재벌이 탄생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3. 맷으며

앞 절(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는 다중(多衆)의 힘을 빌어 일방적 특정사업개발의 추진요구나 특정산업의 진흥요구는 사업성격이나 업종을 차치하고 공감을 얻을 수 없도록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 또는 민간에서 개발 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다단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던 관행적 사업시행방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나 민간에서 국내·외 환경기준에 맞게 개발사업이나 진흥사업을 맞추어 가거나 아니면 사업자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면,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호황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나 정부의 규제가 두려워서라기보다 오히려 자신과 작업동료들, 돼지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축사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기반시설의 청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자신과 작업동료들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축사와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청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즉, 관행축사를 악취저감형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농장주들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정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한 투자와 농장주의 의지없이 관행적으로 사료, 번식, 육종 등에만 매달리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발현이 가시화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러한 불행이 자신일 수가 없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는 운(運)일 따름이며, 다음에서는 자신이 당사자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은 빈손에서 이만큼 일구었다. 특히 열악한 축산환경 하에서 축산농민 뿐만 아니라, 사료회사, 육·유가공회사, 관련조합, 협회, 대학, 연구소 등 모든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노력과 근면함인 축산의 현재가 있게 한 그 원동력이었음을 축산 선진지를 견학한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축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동성과 부지런함을 바탕으로 청정 축산환경기반을 조성해야 생산성도 생산성이 러니와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들의 신규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인재 유입과 청정 축산기반의 조성없이 축산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양돈**